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 |
|----------|------|
| 의안 번호 | 2740 |
|----------|------|

제안년월일 : 2021년 9월 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이광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551호), 김정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598호),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624호) 을 일괄 심사한 결과,
- 3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현행 건물증축 시 정액공사비 산정기준인 ‘증축면적’을 해당 ‘구경’으로 변경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서울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에 대한 업종을 현 업종 구분에 따라 ‘공공용’으로 정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건물증축에 따른 급수공사 정액공사비는 해당 구경에 따라 산정함
(안 제7조제3항)
- 나.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에 대한 업종 구분을 '공공용'으로 함(안 제19조제3항)
- 다. 오염된 수돗물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급수과정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0조의6)
- 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4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함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계량기”를 “수도계량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구경확대공사의 경우에는 증축면적(증축 후 연면적에서 이미 정액공사비를 납부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를 “구경확대 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구경에 대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계량기와”를 “수도계량기와”로, “계량기가”를 “수도계량기가”로, “계량기 전”을 “수도계량기 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계량기에”를 “수도계량기에”로, “계량기는”을 “수도계량기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량기”를 각각 “수도계량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등록을 받은”을 “등록의 대상이 된”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계량기 분리설치)”를 “(수도계량기 분리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계량기”를 각각 “수도계량기”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인입급수관 및 계량기의 설치)”를 “(인입급수관 및 수도계량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량기”를 “수도계량기”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량기의”를 “수도계량기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계량기(공동주택은 호별 계량기)”를 각각 “수도계량기(공동주택은 호별 수도계량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연습용”을 “소방연습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용”을 “공공용”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계량기”를 “수도계량기”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계량기”를 “수도계량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계량기”를 각각 “수도계량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계량기 구경”을 “수도수도계량기 구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계량기와 주계량기”를 “수도계량기와 주수도계량기”로, “계량기에 대하여만”을 “수도계량기만”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계량기”를 각각 “수도계량기”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계량기”를 “수도계량기”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수도사용자 등”을 “수도사용자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계량기”를 각각 “수도계량기”로, 같은 항 중 “잔여 량”을 “남은 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계량기와 호별 계량기”를 “수도계량기와 호별 수도계량기”로, “계량기의”를 “수도계량기의”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사용자 등이”를 “수도사용자등이”로 한다.

제40조제5항 중 “계량기 검침”을 “수도계량기 검침”으로 한다.

제4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6(급수과정 수질관리) ① 시장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관말 지역 등에 대해 수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배출장치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제4호 중 “계량기”를 “수도계량기”로 한다.

제43조제1항제4호 중 “계량기”를 “수도계량기”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을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량기”를 “수도계량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u>계량기</u>·저수조 및 수도꼭지 등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기구)를 말한다.</p> <p>2. ~ 9. (생략)</p> <p>제7조(공사비의 계산방법) ① ~ ② (생략)</p> <p>③ 건물 증축에 따른 인입급수관 <u>구경확대공사의 경우에는 증축면적(증축 후 연면적에서 이미 정액공사비를 납부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정액공사비를 부과한다.</u></p> <p>④ (생략)</p> <p>제9조(급수설비의 귀속 및 비용부담) ① 급수설비 중 <u>계량기와</u>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소유로 하되, <u>계량기가</u> 대지경계선</p> | <p>제2조(정의) ----- -----.</p> <p>1. ----- ----- ----- -----<u>수도계량기</u>----- ----- -----.</p> <p>2. ~ 9. (현행과 같음)</p> <p>제7조(공사비의 계산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구경확대 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구경에 대한</u>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급수설비의 귀속 및 비용부담) ① ----- <u>수도계량기와</u> ----- ----- ----- <u>수도계량기가</u> -----</p> |

밖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수도사용자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에 설치된 호별 계량기에 대하여 자체관리를 원하는 경우의 호별 계량기는 수도사용자등의 소유로 한다.

②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11조(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행) ① (생략)

② 급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3조(계량기 분리설치) ① 전용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 점포별로

수도계량기 전

수도계량기에

수도계량기는

②

수도계량기

수도계량기

제11조(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의 대상이 된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도계량기 분리설치) ①

수도계량기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 분리설치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계량기 분리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인입급수관 및 계량기의 설치) ① 인입 급수관 구경과 계량기의 구경 및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도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 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역류에 따른 수도물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호별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이미 설치된 전용 급수설비에 대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호별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 . ---- 수도 계량기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 수도계량기 -----
-----.

제16조(인입급수관 및 수도계량기의 설치) ① ----- 수도 계량기-----
-----.

② -----수도계량기-----

-----.

제17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 --

--- 수도계량기(공동주택은 호별 수도계량기)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수도계량기(공동주택은 호별 수도계량기) -----
-----.

제19조(사설소화용 급수) ① (생략)

② 수도사용자등은 사설소화용 급수 설비의 수돗물을 연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한 수돗물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사용요금 중 업무용 최초단계의 요금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수도계량기의 시험) ① 수도 사용자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22조(급수중지와 급수설비의 폐지) ①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지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지하수와 수도를 동일 관로로 사용함으로써 교차접속으로 인해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거나 수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생략)

제19조(사설소화용 급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소방연습용-----
-----.

③ -----
----- 공공용 -----
-----.

제20조(수도계량기의 시험) ① -----
----- 수도계량기-----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급수중지와 급수설비의 폐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
----- 수도계량기-----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제25조(구경별기본요금) ① 구경별 기본요금은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상당하는 계량기 구경의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은 호별 계량기와 주계량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호별 계량기에 대하여만 구경별기본요금을 부과한다.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① 시장은 2개월 주기로 계량기로 계량된 사용량에 따라 사용요금을 산정하되 징수결정은 1개월 단위로 한다.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같이하는 용도의 급수를 2개 이상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의 수도요금은 사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략)

제27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구경별기본요금) ① -----
----- 수도계량기-----
----- . ----- 수도계량기-----

----- 수도계량기
구경-----.

② (현행과 같음)

③ ----- 수도계량기와 주수도계량기-----
-- 수도계량기만 -----
-----.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① -
----- 수도계량기-----

----- .-----
-----.

② -----
----- 수도계량기-----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상수도요금의 부과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생략)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 4. (생략)

④ (생략)

제28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① ~ ② (생략)

③ 누수, 미납에 따라 수도사용자들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세대분할) ① 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도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되, 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1. (현행과 같음)
2. 수도계량기-----

3.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① v ② (현행과 같음)

③ ----- 수도사용자등

-----.

제29조(세대분할) ① -----
----- 수도계량기-----

-----.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 ④ (생략)

⑤ 수도사용자들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생략)

제40조의4(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등 조치) ① 「수도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시설

② ~ ③ (생략)

<신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수도계량기 검침 -----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의4(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등 조치) ① -----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

<삭제>

<삭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6(급수과정 수질관리) ①
시장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관말 지역 등에 대해 수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배출장치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수도사용자등의 신고의무)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계량기가 없는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 5. ~ 6. (생략)
- ② (생략)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계량기(설치봉인 포함)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수도요금을 포탈하려는 자
- 5. ~ 9. (생략)
- ② ~ ⑤ (생략)

제41조(수도사용자등의 신고의무)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 4. 수도계량기-----

- 5. ~ 6.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정수처분)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 4. 수도계량기-----

- 5. ~ 9.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시설공단이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47조(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 ① -----

----- 수도계량기 -----

-----.

② ~ ③ (현행과 같음)